

환경표지 인증기준

**EL401**

개정 2013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

# 에어컨디셔너

EL401:2013



환경부

<http://www.me.go.kr>



---

제정자: 환경부장관  
제정: 1998년 5월 8일 환경부고시 제1998-46호  
최종 개정: 2013년 2월 25일 환경부고시 제2013-23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전화 1577-7360)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목차

머리말 .....	0
1 적용 범위 .....	1
2 인용 표준 .....	1
3 용어와 정의 .....	1
4 환경 관련 기준 .....	2
4.1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	2
4.2 냉매 .....	3
4.3 친환경 설계 .....	3
4.4 에너지 소비효율 .....	3
4.5 소음 .....	3
4.6 재활용 체계 구축 .....	3
4.7 합성수지 .....	4
4.8 포장 완충재 .....	4
4.9 재활용률 .....	4
5 품질 관련 기준 .....	4
6 소비자 정보 .....	4
7 검증방법 .....	4
8 시험방법 .....	5
9 인증사유 .....	6

##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401. 에어컨디셔너【EL401-1998/12/2013-23】**의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제표준 서식으로 작성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 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401:2013

## 에어컨디셔너

## Air Conditioner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실내의 냉방 또는 냉·난방을 위하여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도의 것으로서 전기를 동력원으로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의 에어컨디셔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L606, 포장재

EL763,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 —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KS C IEC 62321-4,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4부 — CV-AAS, CV-AFS, ICP-OES 및 ICP-MS에 의한 폴리머, 금속 및 전기전자부품에서 수은의 정량

KS C IEC 62321-5,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5부 — AAS, AFS, ICP-OES 및 ICP-MS에 의한 폴리머와 전기전자 부품에서 카드뮴과 납 및 크로뮴의 분석과 금속에서 카드뮴과 납의 분석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IEC 62321-7-1,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otechnical products — Part 7-1: Hexavalent chromium — Presence of hexavalent chromium (Cr(VI)) in colourless and coloured corrosion-protected coatings on metals by the colorimetric method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일체형**

압축기, 송풍기, 열교환기 등 주요 구성요소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제품

**3.2 분리형**

압축기, 송풍기, 열교환기 등 주요 구성요소를 2개 이상의 캐비닛에 내장한 제품

**3.3 오존층 파괴 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3.4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이산화탄소(CO<sub>2</sub>)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비고** 이 기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07', the Fourth Assessment Report(AR4)에 따른 지속시간 100년의 GWP를 적용한다.

**4 환경 관련 기준**

에어컨디셔너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에어컨디셔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냉매	▪ 온실가스 및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 친환경 설계	▪ 환경부하 저감
유통·사용·소비	▪ 에너지 소비효율	▪ 에너지 절약
	▪ 소음	▪ 저소음
폐기	▪ 재활용 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 감소
재활용	▪ 합성수지	▪ 재활용성 향상
	▪ 포장 완충재	▪ 재활용성 향상
	▪ 재활용률	▪ 폐기물 발생 감소

**4.1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4.1.1 사용 금지 물질**

제품에는 다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 대상'과 인쇄회로기판에 시행된 솔더링(soldering)의 납에는 해당 항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의 화합물, 6가 크로뮴(Cr<sup>6+</sup>) 화합물
- b)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

**4.1.2 구성 부품의 유해원소**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원료를 포함한다.)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

뮴(Cr<sup>6+</sup>)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원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사내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문서로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사내표준에는 유해원소의 종류와 기준, 관리 주기, 처리방법, 문서관리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표 2 유해원소 함량 기준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 <sup>6+</sup> )
기준 (mg/kg)	1 000 이하	100 이하	1 000 이하	1 000 이하
<b>비고</b>	총 크로뮴(Cr)의 함량이 1 000 mg/kg 이하일 때도 6가 크로뮴(Cr <sup>6+</sup> )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고분자에서 총 크로뮴이 검출되지 않을 때 6가 크로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4.2 냉매

냉매는 ODP가 0, GWP가 2 500 이하이어야 한다.

## 4.3 친환경 설계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자원·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배출 및 유해물질 사용 저감, 재활용 재료 사용, 재활용성 향상, 사용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제조하여야 한다.

## 4.4 에너지 소비효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 4.5 소음

냉방을 운전할 때 소음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소음 기준

구분		소음 기준 [dB(A)]	
		실내 쪽	실외 쪽
일체형		55 이하	60 이하
분리형	정격 냉방 능력 4 kW 미만	45 이하	55 이하
	정격 냉방 능력 4~10 kW	50 이하	60 이하
	정격 냉방 능력 10~35 kW	55 이하	65 이하
	정격 냉방 능력 35 kW 이상	55 이하	70 이하

## 4.6 재활용 체계 구축

신청인은 폐기되는 제품(포장 완충재 포함)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전문 기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할 때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4.7 합성수지

- 질량 25 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mm<sup>2</sup> 이상인 합성수지는 폐기할 때 분리·회수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하우징을 구성하는 25 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은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 등 할로젠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젠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질량분율로서 0.5 %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는 허용한다.

보기 anti-dripping agent의 유기불소 첨가제

**4.8 포장 완충재**

개별 포장 완충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펄프폴드 등 재활용된 종이·펄프 재질
- b) EL606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포장 완충재
- c) 폐합성수지를 질량분율로서 50 %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포장 완충재
- d) ODP가 0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발포 합성수지[발포폴리에틸렌(EPE, expanded polyethylene), 발포폴리프로필렌(EPP, expanded polypropylene), 발포폴리스타이렌(EPS, expandable polystyrene)] 포장 완충재
- e) 합성수지 재질에 공기를 주입한 에어셀 포장 완충재

**4.9 재활용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재활용률은 질량분율로서 80 % 이상이어야 한다.

**5 품질 관련 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해당 사항 또는 KS C 9306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소비자 정보**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제품 사용 후 폐기 정보**

수거 기업 전화번호 등 폐 제품의 수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4.1	4.1.1 제출 서류 확인
		4.1.2 8.2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4.2~4.3	제출 서류 확인
	4.4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4.5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6~4.9	제출 서류 확인
품질 관련 기준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 8 시험방법

### 8.1 일반사항

-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댄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뱃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뱃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8.2 구성 부품의 유해원소

#### 8.2.1 납(Pb) 및 카드뮴(Cd)

KS C IEC 62321-5에 따라 시험한다.

#### 8.2.2 수은(Hg)

KS C IEC 62321-4에 따라 시험한다.

#### 8.2.3 6가 크로뮴(Cr<sup>6+</sup>)

KS C IEC 62321 부속서 C '비색법에 의한 고분자와 전자제품에서의 6가 크로뮴의 검출'에 따라 시험한다.

### 8.3 에너지 소비효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8.4 소음

KS C 9306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완전무향실이 아닌 때에는 반사음이 생기지 않도록 벽과 시험품간의 거리는 적어도 2 m 이상으로 충분히 넓어야 하며, 암소음과 측정소음의 차이는 적어도 10 dB(A) 이상이어야 한다.

### 8.5 품질 관련 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또는 KS C 9306에 따라 시험한다.

##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 <sup>a</sup>	에너지 절약 <sup>b</sup>	지구 환경오염 감소 <sup>c</sup>	지역 환경오염 감소 <sup>d</sup>	유해물질 감소 <sup>e</sup>	생활 환경오염 감소 <sup>f</sup>	소음·진동 감소 <sup>g</sup>
해당 여부		●					●
<sup>a</sup>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sup>b</sup>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sup>c</sup>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sup>d</sup>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sup>e</sup>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sup>f</sup>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sup>g</sup> 저소음, 진동 감소							

##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가. 법 제5조의3제4항제1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